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6누519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[redacted]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. 6. 2. 선고 2015구합77738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12. 11.

판 결 선 고 2019. 1. 15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11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3,020,000원, 가산세 91,690,680원, 농어촌특별세 22,471,060원, 등록세 133,020,000원, 가산세 92,927,770원, 지방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5

육세 42,529,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, 12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함

○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4행 "달리한다."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

즉,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,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부동산 취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

한편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,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·설립되어 있었다. 특히 원고가 2010. 4. 23.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25

집합투자업자가 2010. 5. 7.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. 6. 3.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, 등록 요건을 생략한 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만 받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산해버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없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